



제재조치 공지

CBOT-16-0483-BC
발효일: 2018년 3월 16일

문서번호: [CBOT-16-0483-BC](#)

회원여부/비회원: **Sumitomo Mitsui Trust Bank, Limited**

CBOT 규정위반: **CBOT 규정 432.W: 일반 위반**

어느 당사자든지 거래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용인 및 대리인을 성실하게 감독하지 못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CBOT 규정 534: 가장매매(Wash Trades) 금지

그 어떤 사람도 해당 주문의 목적이 시장 리스크에 노출되는 진실한(*bona fide*) 시장 포지션을 확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 (가장매매나 가장매도로 일반적으로 알려지거나 불리는 거래)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에 동일한 상품의 동일한 만기월의 매수·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수락해서는 안 되며, 동일한 행사가의 풋이나 콜옵션의 매수·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수락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 리스크나 가격 경쟁을 무효화하려는 의도로 입력한 여러 공동 실소유주 계좌들을 위한 매수, 매도 주문 또한 가장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조사결과: 제재의 근거가 되는 규정 위반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Sumitomo Mitsui Trust Bank, Limited (“SMTB”)의 합의 제안에 따라, 2018년 3월 14일 CBOT 영업행위위원회 위원단(“Panel”)은 2016년 2월 중 네 번의 거래일에 SMTB의 도쿄지점 소속 트레이더가 Globex를 통해 여러 CBOT 국채선물 시장에서 많은 거래를 실행하였는데, 해당 거래의 양측 계좌 모두 SMTB가 실소유자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거래의 목적은 SMTB 계좌 사이에 포지션을 이동하는 것이었다. 해당 트레이더는 현재는 이런 유형의 거래는 후선부서 포지션 이관 (back office transfer)을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또한, 위원단은 해당 거래를 할 때 트레이더의 행위가 거래소 규정에 부합하도록 SMTB가 충분히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훈련 및 감독을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거래 이후 SMTB는 개선 조치 및 교육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단은 SMTB가 CBOT 규정 432.W 및 534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제재내용: 합의 제안에 따라 위원단은 SMTB에 벌금 \$105,000를 부과하였다.